

2020년도 제1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20. 7. 21.(화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신창환 위원(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9건(안건번호 제2020-74794호~74893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20-74794호~74893호에 올라 온 음악, 방송물, 영화 등199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것들로서 이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20-74794호~제2020-74893호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C 위원 : 대상 안전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 방송)을 웹하드 등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중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D 위원 : 상기 안전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

2020년 제14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30.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최현용